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96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박주민 · 김 윤 · 전현희
정준호 · 한준호 · 김한규
장철민 · 이성윤 · 김남근
최혁진 · 김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세계를 인식하고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활용하는가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가려내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영상·음성·이미지가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딥페이크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탓에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노인·장애인·농어촌 주민 등 정보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워, 미디어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자 함.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고, 학교 안팎과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을 보장하며,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미디어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과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이 연령·성별·장애·소득·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 민주적 소통, 디지털 윤리를 함양하도록 하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 2조).

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3조).

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내용과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충실히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함(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및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령대별·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과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소득·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민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 민주적 소통, 디지털 윤리를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신문·방송·잡지·인터넷·소셜미디어·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 정보를 생산·전달·유통하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

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말한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4.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합성·변조된 음성·영상·이미지·문자 콘텐츠를 말한다.
5.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미디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기회가 정보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국민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방안
3. 정보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4.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등 신기술 환경 대응 교육 방안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6.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본계획 및 그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처 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디어·교육·법률·장애인·고령자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기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충실히 실시되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의 양성 및 연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직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연수 과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연령,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 교육 등의 사업

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 한다)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12조(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기술적 특성과 식별 방법
2.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이용한 성범죄, 보이스 피싱 등 디지털 범죄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
3.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관련 법적·윤리적 쟁점과 책임
4.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로 인한 범죄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구제

절차

③ 교육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령대별·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 접근 및 이용 실태
2. 비판적 이해 및 허위·조작정보 식별 능력
3.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능력
4. 미디어 표현·소통 및 디지털 윤리 의식
5. 정보 취약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③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연차보고서) 교육부장관은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민간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민단체, 학술단체, 언론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